

## 한국고등교육의 제도적 구조재편의 특성 - 1945~1955년을 중심으로 -

이 광 호\*

- I. 문제의 제기
- II. 우수와 평등의 이중적 재편원리
- III. 각종 자원의 편중배분
- IV. 결론: 한국고등교육의 특징적 성격형성

### I. 문제의 제기

한국고등교육은 해방후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그 결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국민에게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향한 입학경쟁과 이를 둘러싼 교육적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왔으며, 한편으로 고등교육 자체의 교육적 사회적 기능과 효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않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들어 대학교육의 역할에 대한 회의와 의문은 기업경영인들에 의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대학생들에게는 전문

지식을 기대할 수 없으며, 학교에서 양성해내는 지식이나 인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과는 큰 차이가 난다'(조선일보, 1991.8.28)는 지적을 비롯하여, '대학측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그간 대학을 외면해야했던 원인을 파악하고 진정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변모하려는 적극성을 띠지 않는 한 대학의 발전은 물론 우리 국가의 번영은 더딜 수밖에 없다'(허진규, 1991: 81)는 경고성 충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교육은 왜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에 대한 학문적 대답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의 자질문제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서부터 대학이 안고 있는 연구와 교육조건 등과 관련된 재정적 요인이나 사회적 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는 대학교육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에 실패한 원인의 일면을 고등교육의 발전과정에서 특성화된 제도적 구조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에서 찾고자 한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40년동안 기능적 측면에서 특성있게 분화되지 못한 채 종합대학을 향한 일종의 획일화된 발전만을 해왔다(참조: 이종재외, 1990; 박동서외, 1991). 즉, 한국의 고등교육체제는 그 발전과정에서 수직적으로는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간의 기능상의 중복과 모방현상이 지배하고 있으며, 수평적으로는 각 기관간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결여된 채 독특한 교육기관으로서의 개성을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로 고등교육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결국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력의 육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체제의 기능적 미분화는 해방후 한국고등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축적되어온 제도적 특성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제도적 구조 형성에 대한 교육학적 해명은 한 사회의 교육의 역할과 성격을 이해하는 주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문적 미개척분야로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참조: 江原武一, 1984). 그런데 80년대 들어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하여 교육정책의 대안을 개발하고 사회개혁에 있어서 가치 있는 실천적 도구를 찾아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교육체제의 제도적, 조직적 특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교육의 구조적 접근이나 형성사적 접근의 형태로 시도되었다(참조: Ericson, 1982; 김기석, 1989; 이광호, 1990). 이러한 교육학적 연구를 시도하는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결과가 교육실천에서 다양한 정책제안들의 성공과 실패를 예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어떤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안된 정책적 시도가 다른 어떠한 교육체제의 조건과 성격으로 인해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정책의 기대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교육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초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체제의 구조분석과 관련하여 한국고등교육의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적 개관을 통해 고등교육의 기능분화 과정의 토대가 되는 조성요인과 제약요인을 구명하려는 교육학적 시도(이종재외, 1990)는 주목할만하다. 그런데 대학의 성장유형에 대한 이 연구는 고등교육의 성장과정의 현상기술적 분석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고등교육체제는 왜 종합대학을 향한 획일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으며, 이를 주도하고 뒷받침한 교육적 신념이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등의 논의는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적 검토(참조: 이광호, 1990) 결과, 한국고등교육의 발전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제도적 구조상의 원형적 특성들이 사실은 일제하에서 해방된 직후의 고등교육의 재편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 당시 고등교육체제의 재편에 따른 제도적 구조형성의 특성을 밝히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물음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고등교육의 재편 과정을 주도한 교육적 신념과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신념과 원리에 따른 교육자원의 배분구조와 실태는 어떠하였는가? 셋째, 고등교육 재편의 결과로 나타난 제도적 구조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과제는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형성사적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교육의 역할과 문제의 근원을 밝혀보려는 시도에

서 비롯된 것이다.

본 연구가 연구의 대상시기를 해방 직후부터 1955년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 미군정하에서 여러가지 교육체제의 재편작업들이 이루어졌지만, 미군정이라는 특수한 통치성격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재편 작업은 정부수립 이후로 미루어졌고, 정부수립이후에도 불과 2년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실질적인 재편의 마무리는 전쟁후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 특히 고등교육의 재편은 각종 제도의 개정이나 신설과 아울러, 소위 1차 팽창기(1946~48년)와 2차 팽창기(1952~55년)를 거치면서 팽목할만한 양적 성장과 제도적 형태와 구조가 고착되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미군정 말기부터 지나친 고등교육기관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규제노력이 1955년 2월 ‘대학설치기준령’이라는 형식적 규제가 마련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되었고, 결국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방직후부터 1955년에 이르는 10여년 동안에 고등교육체제의 제도적, 구조적 특성은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 II. 우수와 평등의 이중적 재편원리

해방 직후 고등교육의 재편과정의 기본방향은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전제주의적이고 일본적인 교육을 탈피하여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전국이념에 맞는 민주주의 교육으로의 전환(참조: 오천석, 1975)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제하에서 경성제국대학과 각종 전문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적 형태는 식민지적 차별과 교육적 불평등에 기초한 것으로써 ‘새나라가 탄생함에 있어 옛 체제를 그대로 답습할 수 없다(오

천석, 1975: 22)’는 대전제하에, 교육재편 과정은 교육의 민주화로 표방되었다.

따라서 당시 미군정은 고등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두가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 교육의 평등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의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을 4년제 대학으로 통일하는 한편, 대학을 신설하고 일제하의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하는 등의 양적 확대를 시도하였다. 둘째, 새로운 국가건설에 걸 맞는 최고의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계의 어느 국가의 일류대학과도 비유되는 교육수준을 가진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에 목적(김영봉외, 1980: 103)을 두고 국립 종합대학의 설치를 의도하였다. 즉, 고등교육의 평등을 전제한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유지하려는, 말하자면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이러한 두가지의 개혁조치는 궁극적으로 유능한 인재와 학자양성 및 교육의 균등화(동아일보, 1946. 7. 14)를 의도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1946년 초 문교부 고등교육국에서는 ‘대학령’과 ‘학위령’을 골간으로 하고 대학설립의 기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등교육 개혁의 내용을 담은 대학개편 계획(*the great schools plan, plan*, 참조: 돌베개편, HUSAFIK4, 1988: 566-568)을 마련하였다. 고등교육의 제도개편과 직접 관련된 대학령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대학의 수업년한을 4년 이상으로 한다. 둘째, 대학의 설립은 국·공·사립으로 하되 사립은 재단법인이어야 하며, 특히 국립 종합대학의 학부 종류는 국가원수의 명령으로 정하고 각 대학은 참의원회를 두어 학과와 강좌의 설치와 폐지 등 대학 내부

의 모든 규정을 정하도록 한다. 셋째, 대학의 교육내용은 국어, 문학사, 자연과학개론, 체육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등이다.

### 1.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국립 종합대학의 설립

고등교육의 재편과정에서 국립 대학의 설립 의도는 서울대학교와 지방 국립대학의 설립 시도, 각종 사범학교의 국립으로의 전환 및 한국 전쟁기간 동안의 각도 소재 국립 종합대학의 설립 등으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었다. 국립 고등교육기관 설립 전략은 당시 대학의 난립을 억제하고 기존의 학교들을 통폐합함으로써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노력분산의 방지(이희수, 1986: 61-62; 백낙준, 1953: 250)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재원조달과 지원을 통해 국립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당시 새로운 국가건설에 필요한 최고의 엘리트들을 국가에서 직접 양성하는 동시에 고등교육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교육학적 신념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학적 신념은 당시 미국에서 내한하기 시작한 교육조사단이나 사절단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었다. 즉, 한국교육의 재편을 조언하기 위해 미군정기부터 내한하기 시작하였던 교육사절단은 한결같이 고등교육 부문의 확대와 개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그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1947년 6월 미국무성과 국방성이 공동으로 파견하였던 「대한 교육·정보 조사단(The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Survey Mission to Korea, 통칭 안트미션: Andt Mission)」은 고등교육이 최고의 교육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확보될 수 있는 재원, 시설 및 인원의 범위 내

에서 고등교육 기관의 확충을 강조하고 그 한 가지 방도로 국립 서울대학교의 설립 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1952년 유네스코(UNESCO)와 운크라(UNKRA)는 한국교육의 재편계획을 담당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고등교육의 발전 대책과 당면 문제를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육감독 체도를 개혁할 것과 기존 대학의 연합 가능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대한민국 문교부, 주한 미군 경제협조처, 1960: 5-7).

국립대학의 설립유형으로는 미군정 하에서의 국립 서울대학교와 정부수립후 문교당국의 1도 1교의 국립 종합대학교 설치 방침에 따라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부산 등지에 설립된 국·공립대학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국립 서울대학교는 오천석 등 미군정하의 핵심적인 문교관리들이 경성대학교와 주요관·사립 전문학교를 통폐합하여 창설한 것이다. 설립목적은 일제하에서의 고등교육의 폐쇄성과 군용할거식의 소규모 학교와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제거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재정상의 합리성도 도모할 수 있는 신생국가에 필요한 우리 민족의 고등교육기관을 건설(동아일보, 1946. 7. 14)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표면상의 설립목적은 국내 최고의 우수한 인재와 학자를 양성할 수 있고 세계의 일류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에 둔 것이었다. 즉 당시 미군정 문교부장인 유억겸은 국립종합대학의 설립에 대한 오천석의 제의를 듣고 '오박사의 착안과 구상은 참으로 좋습니다. 나도 일본 유학시 조선에도 동경제대와 같은 국립대학이 있었으면 하고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교원복지신문, 1987. 9. 28)'고 회고

하며 그 제안에 즉각 동의하였다.

이렇게 볼 때 당시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인 미군정 문교관리들은 일본식의 동경제대와 각 지방의 제국대학과 같은 우수한 국립대학의 설립을 구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미군정 문교부는 이미 1946년 9월경부터 서울 대학교를 설치하는 것과 아울러 부산, 대구, 광주, 춘천, 대전 등지에도 각 지방의 여론에 따라 국립대학을 설치할 복안을 가지고 현지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있었기(동아일보, 1946. 7. 16)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당시 완강하고 즉각적인 사회적 저항에 직면(이른바 국립 서울대학교의 설립에 반대한 국대안 파동, 참조: 이희수, 1986; 최혜월, 1986)하여 서울대학교의 설립이 외에는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후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경북 대구, 부산, 광주 등지에서는 구체적인 국립대학의 설립시도가 있었지만 국대안 반대운동의 여파로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보류되었다.

예를 들면,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20일, 후에 군정청 경상북도 학무과장을 역임하였던 이규원을 좌장으로 하여 대구시 지역유지 30여 명이 대학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그 방법을 논의한 결과 '종합대학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45년 11월에는 다음 해에 법문학부, 농학부, 의학부의 3개 단과대로 구성된 종합대학을 개교할 목적으로 준비위원회를 확대하여 유지 100여명으로 '경북종합대학 기성회'를 발족하였으나, 격렬한 국대안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설립을 미루어 오다 1946년 11월 27일에야 경북 도지사 명의로 대구 국립 종합대학 설립 인가를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였다. 그런데, 당시 군정청 문교부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 반

대운동이 한창이었고, 좌·우의 대립이 극한 상황에 도달해 있던 사회·정치적 여건 때문에 문교부의 대학설립에 대한 방침 변경을 이유로 종합대학 추진안을 철폐하고 단과대학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결국, 국립 종합대학 건립 계획은 백지화되어 1947년 일부 지주의 토지기부와 향교재단 재산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대구 문리과대학'이 설립되었으며, 1947년 8월에는 대구대학으로 개명되는 동시에, 운영체도 사립으로 확정되었다(참조: 대구대학, 1966: 10-12). 이러한 대구대학의 설립 경위는 당시 지방국립대학 설립 추진계획이 전국적인 국대안 반대파동으로 인해 여의치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산대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 직후 부산에서는 일부 미군정청 경상남도 행정 간부들이 참여한 '민립대학 설립기성회'의 조직을 비롯하여 '남선대학 설립기성회' 및 부산음식업 조합 등에서 추진한 대학설립 시도 등, 몇몇의 대학설립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대학설립 기성회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군정청 경상남도 내무부 학무과장 윤인구와 미국인 고문관 에디(Eddie) 중위는 자신들이 주축이 되어 기존의 설립기성회들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국립대학으로 설립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한 총독부 산하 131개 어용단체의 해산에서 얻어지는 청산금을 주요한 대학설립 기금으로 하고, 기존 설립기성회 간부들의 후원을 얻어 부산대학교가 발족하게 되었다(참조: 부산대학교 40년사 편찬위원회, 1986: 4-6). 그러나 국립 부산대학교 역시 종합대학으로 설립되었다가 통폐합 대학의 반대와 사회적 저항으로 다시 인문과대학(人文科大學)과 수산

대학으로 분리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1953년경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국립종합대학으로 발족할 수 있었다.

이렇듯, 미군정 문교당국의 각 지방에 대한 국립종합대학의 설립 의지는 매우 강력하였던 것 같다. 즉, 도립 공주사범대학의 설립을 주도 하였던 당시 서진순 충남도지사는 주요 설립추진 배경에 대해 ‘실질상으로는 체면으로나 본도에 대학 1교는 지사로서 꼭 설치하여야 할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공주사범대학35년사 편찬위원회, 1983: 56)’이라고 밝히고 있을 정도 이었다.

어쨌든 미군정기에 일부 좌절되었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지방 국립 종합대학의 설립계획은 정부수립이후 백낙준 문교부 장관이 취임 하면서 재시도되었다. 당시 1도1교(一道一校)의 국·공립 종합대학교 설치 방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책적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참조: 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 154; 백낙준, 1953: 288-289; 문교부, 1958: 94). 첫째, 고등교육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고등교육기관의 6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충남과 전북 등 특정 지방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전무하였으므로, 이러한 불균형 요인을 해소하여 교육기획의 균등화를 실현하려는 조치였다(참조: 반영환, 1966: 159). 둘째, 사립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先制)적 의미를 가진 정책이었다. 즉, 당시는 한국전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초급대학 제도의 창설과 때를 같이 하여 사립대학 신설 계획이 팽창함으로써, 이를 국립대학 설치로 흡수하거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이중적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셋째, 동일지역에 산재해 있는 몇몇의 국·공립대학

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경북 대구 지방의 경우 해방 직후부터 3개 국립대학 즉, 대구농과대학, 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등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사립대학으로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이 신설되어 있어 한 지역 내에서 총 다섯개의 국·사립 대학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당시 문교부는 이들을 통합하여 단일의 국립 종합대학으로 설립하려 했으나, 사립재단의 거센 반발로 3개 국립대학만을 통합하여 경북대학교를 창설하였다(참조: 경북대학교30년사 편찬위원회, 1977: 78-104). 넷째, 각 지방의 대학 설립 열의와 계획을 국립대학 설립으로 결집시켜 적은 국고지원으로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였다. 결국, 문교부의 1도1교 국립 종합대학 설립계획은 난립하는 대학들을 양적으로 정비하여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데 일차적인 정책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52년 10월에는 경북, 전남, 전북대학교가, 1953년에는 충남, 충북, 부산대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신설된 지방 국립 종합대학은 설립 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설립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참조: 이광호, 1990: 110-113)을 갖고 있었다. 첫째, 대학 설립은 당시 각도의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행정관료와 지방유지 및 각급 기관장들로 구성된 설립추진 위원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는 당시 지방 국립대학이 중앙 문교부의 고등교육국과의 협의 아래 지방 정부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충남대학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국·공·사립대학을 통폐합하여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3개의 국립대학을, 전북대학교는 독립 이리농과대학, 사립 전주명륜대학, 군산대학관 등의 3개 공·사립대학을 주축으로 설립되었다(전북대학교25년사 편찬위원회, 1978: 66-68).

그런데 다른 지방 국립대학과 달리 충남대학만이 도립으로 설치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다른 대학들이 기존의 국·공·사립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립을 택한 반면, 충남대학은 순수하게 새로이 설립하는 기관으로 이해의 상충이나 큰 재정적 부담없이 지방정부의 운영으로 귀착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참조: 충남대학교30년사 편찬위원회, 1982: 11-14)

이와 같은 최고의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 종합대학의 설립은 그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사립대학의 신설과 확대를 조장하는 등으로 고등교육의 팽창을 선도하고 있었다. 미군정기에 일차적으로 시도된 국립종합대학 설립 계획은 국대안 파동으로 설립 방침 자체가 변경 보류됨으로써 경북 대구지방에서 볼 수 있었던듯이, 설립준비 중이던 일부 지방대학이 단과대학이나 사립학교로 신설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는 결국 1946년과 1948년 사이에 고등교육기관이 급팽창(제1팽창기)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정부수립후 이차적으로 시도된 각도의 국립종합대학 신설은 고등교육 기회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등교육체제의 무계획적이고 단편적인 시도였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지방 국립대학 설립으로 기대하였던 대학신설 억제나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자연도태 및 동일 지역 국·공·사립대학의 통합 등은 단순한 기대

효과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즉, 1951년에 49개교(대학교4, 대학28, 초급대학9, 각종학교8)였던 고등교육기관수가 1955년에는 71개교(대학교15, 대학30, 초급대학6, 각종학교20)로 팽창하였고 학생수도 20,000명에서 78,649명으로 무려 398% 증가하였다(참조: 문교부, 1958: 96, 102). 결국 이는 지방 국립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한 1952년부터 1955년의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대(제2팽창기)를 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문교당국은 지방 국립대학의 설립의도와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두가지의 조치를 통해 고등교육 확대의 제도적 조건을 형성해 주었다. 첫째, 한국전쟁기간 동안 파괴된 국토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일꾼을 단기간에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야간대학과 2년제 초급대학의 설립을 인가하였다(문교부, 1958: 94-95). 그런데, 이에 따라 설립된 효성여자 초급대학을 비롯한 12개 대학 중 서울 소재 대학이 9개 대학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문교당국은 한국전쟁 기간중 기존 사립대학들이 종합대학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저지할 만한 합리적 명분을 갖지 못하였다. 즉, 정부수립 후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년 4월 대통령령 제633호로 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의 잦은 개정과 빈번한 기존 학교에 대한 개편인가 조치는 기존의 각종 사립학교나 대학이 상급기관으로 승격할 수 있는 좋은 명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먼저, 1950년 4월에 공포한 「교육법 실시에 따르는 기존학교에 관한 조치령」에 따라 기존 학교, 그중에서도 초급대학 및 대학에 대하여 1950년 3월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 그 해 3월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다시 「교육법 개정에 따르는 현존 학교에 관한 조치령」으로 기존 학교, 그중에서도 초급대학 및 대학에 대하여 그 해 12월까지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새로이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성균관대학교사 편찬위원회, 1978:214). 또한, 1952년 4월 교육법시행령 공포 이후에 또다시 각급 학교는 설립 갱신을 문교부에 승인받아야만 했다. 각 고등교육기관 운영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빈번한 재인가 기회는 대학과 종합대학으로 이행해가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었다(참조: 중앙대학교사 편찬위원회, 1970:173).

문교당국은 고등교육기관들의 승격 노력을 학교운영자들의 욕망의지의 표출로 간주하여 학과의 증설 및 대폭적인 정원의 확충과 함께, 학생모집과 대학원의 개설 등은 별도 지시에 따르게 하고, 총학장의 채용 승인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라는 교육감독 조항만을 명시한 채 그 승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문교당국의 국립 종합대학 신설과, 빈번한 재인가 조치는 대학운영자들에게 승격 기회와 의무 및 학교정원 확보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고등교육 팽창의 조건을 충실히 형성시켜준 셈이었다.

## 2.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양적 확대와 그 유형

해방 직후 일제하의 고등교육의 폐쇄성을 일소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양적 확대는 시기별로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창설된 1946년부터 48년까지(제1 팽창기)와 지방 국립종합대학이 신설된 1952년부터 55년까지(제2팽창기)의 양기간 사이에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제도적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고의 엘리트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 종합대학의 선도하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일제하에서의 사립 전문학교를 대학령에 기초하여 대학으로 승격 개편하는 형태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각종 사립대학을 신설하는 형태가 있었으며, 끝으로 해방직후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경과적 조치로 존속된 각 대학의 전문부 병설이나, 야간대학제 등과 같은 제도적 기제들도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우선 제1팽창기의 성장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군정청 문교부는 일제하에서의 전문학교를 폐지하고 고등교육기관을 4년제 대학으로 통일한 결정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1946년 9월의 신학기를 기해 국립 서울 종합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연희, 고려, 이화여자 대학교는 사립 종합대학으로, 나머지 각종 전문학교는 학교사정이 준비되는대로 대학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미군정기의 지방 국립대학 설립의 방침변경으로 대구(대구의과대학), 광주(광주의과대학), 춘천(춘천농과대학), 이리(이리농과대학) 등지에 독립대학들이 신설되고, 아울러 단국대학, 국학대학, 청주상과대학 등과 같은 많은 각종 사립 대학들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당시 문교부는 1946년 12월에 급팽창하는 대학설립을 견제하기 위해 대학교원의 자격과 대학설립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을 대학교, 대학, 대학관, 학관의 4등급으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즉, 대학교는 3개 이상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는 종합대학이며, 대학은 단과대학을, 대학관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정규대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대학정도의 기관이며, 학관은 주

야간을 불문하고 고등학술 기예를 전수하는 곳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동아일보, 1946.12.3). 그런데 4등급의 고등교육기관은 엄격한 역할차이나 교육내용 등의 질적 차이보다는, 학교의 규모나 학생정원과 같은 양적 규모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고 있었다. 즉, 대학관은 대학으로서의 재정적, 인적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대학으로 승격내지 이행하기 위한 준비기관이었으며, 대학과 대학교는 단지 단과대학의 구성수로서만 구분되어져 있을 뿐이었다. 실제 대학관은 대학령에 의한 특종학교로서 비록 학위증은 수여할수 없었으나, 그 교육내용이나 교과과정은 4년제 정규 대학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전국대학교교지 편찬위원회, 1971:142; 한국교육십년사 편찬위원회, 1960:92).

한편, 대학의 신설과 승격이외에 제1팽창기의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을 가져다준 제도적 기제로는 당시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던 전문부의 형태를 지적할 수 있다. 전문부는 본래 전문학교가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 개편할 때, 일제 하에서 전문학교로 입학한 학생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1949년까지 존치하는 한시적인 3년제 전문과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방 직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부와 전문부를 함께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를들어, 1946년 12월 현재 국립 서울대학교에서는 공과, 사범, 법과, 상과, 의과, 농과대학에 각각 학부와 전문부가 병설되어 있었으며, 치과대학에는 전문부만이 개설되어 있었다. 또한 연희, 고려, 이화여자 대학교 등의 종합대학과 국민대학관에도 학부와 전문부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며, 특히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 등에서는 전문부가 제1전문부와 제2전문부로서 이중으로

개설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국학학교나 구 세브란스 전문학교, 구 숙명여자 전문학교, 구 경성여자 전문학교 등과 같이 아직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지 못한 학교들은 전문부만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었다(참조. 문교부, 1948:34-36).

그런데, 당시 전문부 설치의 이러한 본래 취지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방 후 새로 신설된 일부 사립대학이나 대학관에도 전문부가 부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해방 후 신설된 조선정치대학관이나 국민대학관이 전문부를 부설하고 있었다. 해방후 신설된 대학에 전문부를 부설한 이유는 '재학생 중에는 단기의 교육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도 많기'(전국대학교교지 편찬위원회, 1971:145)때문이라는데 있었다. 즉, 신설 대학의 전문부 부설의 취지는 일제하의 전문학교와 유사한 역할을 기대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대는 전문부 설치의 필요성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선 전문부 졸업생은 거의 모두 편입 등의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학부와 전문부는 입학자격이나 교육과정의 구성면에서 거의 동일하고 다만 수학년만이 전문부는 3년, 학부는 4년이라는 점, 그리고 학부졸업생에게 학사증을 주는데 반해 전문부 졸업생에게는 졸업장만 주고 학사증을 주지 않는다는 형식상의 차이만있을 뿐이었다. 또한, 학부와 전문부는 실제 입학생의 연령이나 출신학교별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참조: 이광호, 1990:93-94). 이렇게 볼 때, 당시 전문부를 졸업하면 학부 2학년으로

편입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불합리하게 보일 정도로, 전문부는 대학의 수학기간을 1년 단축시킨 축소형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해서, 해방 직후 대학에 부설된 전문부가 학부의 전공 학과와 독립적으로 단기간의 전문교육에 적합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한 제도적 형태는 아니었다. 결국, 전문부는 학부의 전공영역과 다른 독자적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독자적인 역할을 갖기보다는, 대학의 열등기관이거나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또다른 통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형태로 증가된 고등교육은 제1팽창기를 구가하며 1946년 12월에 23개교인 고등교육기관수가 1947년 12월 현재 총 31개교로 증가하였다. 1947년 12월 현재 고등교육의 설립별, 지역별로 학교수, 학생수로 나누어 제1팽창기의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립별로 국립이 4개교, 도립 4개교, 사립 23개교로 사립의 의존율이 74.2%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소재 대학이 21개교, 지방이 10개교로 서울에 67.7%의 대학이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학생수는 총 20,734명이며, 설립별로는 국립대학에 8,012명, 도립 742명, 사립 11,980명으로 전체의 57.8%가 사립대학에 재학중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8,639명과 지방이 2,095명으로 학생의 서울 편중율이 89.9%에 달하고 있다. 남녀별 구성은 남자가 17,332명 여자가 3,402명으로 남학생이 전체 학생의 83.6%를 차지하고 있다(참조: 문교부, 1948: 79-82). 이렇게 볼 때 고등교육의 제1팽창 결과는 교육기획 평등을 위한 양적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서울소재, 남학생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바로 제2팽창기를 주도한 지방 국립

종합대학의 설립을 시도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해주는 바탕으로 작용하였다.

1952년 지방 국립 종합대학의 신설로 시작된 고등교육의 급팽창 현상은 성장유형면에서 미군정기의 팽창형태와 매우 흡사한 것이었다. 즉, 지방 국립대학의 설립, 각종 학교의 대학으로의 승격과 신설 및 초급대학제도의 설치 등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장형태는 미군정기에 대학으로 승격하였거나 신설된 대학들의 종합대학으로의 이행에 의한 팽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대학은 1952년에 승격한 성균관, 동국, 중앙, 조선대학교 등이며, 1955년에는 신홍대학교와 숙명여자 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이행하였다. 당시 문교부령 제 119호에 따르면, 종합대학교는 비교적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자연과학 계통의 단과대학을 적어도 1개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많은 경우 이를 완벽하게 실현하지 않더라도 별 커다란 상관없이 승격 인가되고 있는 실정이었다(참조: 유네스코·온크라 교육계획사절단, 1952: 57).

특히 대학과 종합대학으로의 승격은 학과수와 학생정원의 증원에 의한 고등교육인구의 확대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몇몇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먼저 경희대학교는 1952년 12월에 4년제 신홍대학으로 인가되면서 4개 학과에 800명 정원이던 것이 1954년 4월에 학과를 증설하여 1,04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1955년 2월 종합대학으로 인가되면서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정경대학, 체육대학의 4개 단과대학에 총 1,568명의 정원을 확보하였다(참조: 경희20년 편찬위원회, 1969: 45). 또한, 1953년 2월에 종합대학이 된 성균관대학교는, 1951년

12월 교육법 개정에 따른 개정 인가로 학과 증설과 함께 1,320명으로 늘어난 정원이 불과 3개월 후 문리과대학, 법정대학, 약학대학의 3개 단과대학에 1,560명의 정원으로 확장되었다(참조: 성균관대학교사 편찬위원회, 1978: 76). 중앙대학교 역시 1946년 8월 4년제 대학 640명의 정원으로 학생을 모집한 이래, 1952년 4월 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갱신 인가시 1,280명의 정원에서 1953년 2월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4개 단과대학에 총 1,460명의 정원을 확보하였다(중앙대학교사 편찬위원회, 1970: 87). 이렇게 볼 때, 앞서 지적하였듯이, 1950년 이후 빈번한 학칙갱신 인가를 활용한 종합대학으로의 승격은 당시 사립대학들의 입장에서선 집요한 정원확대 노력의 최종 결실이 되는 셈이었다.

또한 이시기에 종합대학으로의 이행과 함께 고등교육의 양적확대를 가져온 주요한 제도적 형태는 1950년 3월에 1차로 개정된 교육법에 명시되어 새로운 제도적 기관으로 등장한 ‘초급대학’이었다. 초급대학제도의 신설은 정부수립 후 국토개발과 국민경제에 필요한 실제적 일꾼을 양성한다는 현실적 목표와, 그리고 단기간에 전쟁으로 파괴된 국토를 재건할 일꾼을 양성할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문교부, 1958:

92-95).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정부수립 직후 2-4년제의 이리농과 초급대학, 광주농과 초급대학, 목포상과 초급대학 등의 국·공립 대학이 우선적으로 창설되었다. 또한, 한국전쟁기에는 2년제 사립 여자초급대학으로서 효성·덕성·동덕·근화여자 초급대학과 조양보육 초급대학 등이 신설되었다. 특히, 교육법 시행령 제120조에서는 대학(단과)에 초급대학을 병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시 각 대학은 전문부를 폐지하는 대신 초급대학을 부설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50년부터 단독으로 설립된 초급대학 이외에 일부 대학에서도 전문부 대신 2년제의 초급대학을 부설하고, 학부와 유사한 학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전문부와 초급대학이 그 명칭과 수업년한만 달리 할뿐 기능이나 위상에서는 동일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즉, 미군정 하에서 대학에 부설된 전문부를 폐지하고 새로이 창설된 초급대학으로 대처하는 형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연희대학교의 1946년 학칙과 1950년에 변경 인가된 학칙의 관련조항을 통해 전문부와 초급대학의 위상을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

〈표 1〉

연희대학교 학칙 중 전문부와 초급대학의 조항 비교

1946년 8월 15일 인가 학칙	1950년 5월 25일 인가 학칙
제7장 전문부	제7장 초급대학
제66조 본 대학교에 전문부를 부설함을 득함.	제66조 본 대학교에 초급대학을 부설함을 득한다.
제67조 전문부에 문과, 상과, 이과 및 신학과를 치함.	제66조 초급대학에 문과, 상과, 이과 및 신학과를 치한다.
제68조 전문부 정원은 800명으로 함.	제68조 초급대학 정원은 800명으로 한다.
제69조 전문부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함.	제69조 초급대학 수업년한은 2년 혹은 4년으로 한다.

자료: 연세대학교창립백주년기념사업회 연세대학교 백년사(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p 367.

위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부와 초급대학의 관련조항은 명칭과 수업년한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결국, 전문부와 초급대학은 고등교육의 확대와 팽창에 기여하였을 뿐이었다. 즉, 일부 사립대학에서 전문부와 초급대학은 학생정원을 늘리는 중요한 제도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당시 많은 사립대학들은 전문부와 초급대학의 제도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전문부를 초급대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정원을 확보·확대하고 있었다(전국대학교교지 편찬위원회, 1971: 153). 또한 초급대학은 전문부와 같은 4년제 정규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한 대기기관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이는 당시 전문부와 초급대학 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학부로 진학하고 있었다(참조: 대성60년사 편찬위원회, 1984: 313)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제2팽창기의 양적 팽창의 결과 1995년 3월 현재 학교수 71개교, 학생수 78,33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앞서 제시한 1947년 12월의 현황을 기준으로 해방 때 학교수는 40개교가 늘어나 229%의 증가율을, 학생수는 57,596명이 증가하여 무려 378%의 성장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를 설립별, 지역별로 학교수와 학생수로 나누어 그 현황을 제1팽창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우선 설립별 규모로 보면 사립학교가 58개교로 전체의 8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수도 45,660명(58.3%)이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사립대학에의 의존율은 제1팽창기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반해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서울소재 대학이 32개교(54.9%)에 재학생 44,030명(56.2%)으로 나타나 제1팽창기에 비해 서울 편중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

역간 교육기회 불평등의 완화는 지방 국립종합대학의 설립에서 기대하였던 정책의도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제1팽창기와 2팽창기 고등교육 기관의 현황 비교

		1947년 12월 현재	1955년 3월 현재
학 교 수	국립	4( 12.9)	8( 11.3)
	공립	4( 12.9)	5( 7.0)
	사립	23( 74.2)	58( 81.7)
	서울	21( 67.7)	39( 54.9)
	지방	10( 32.3)	32( 45.1)
	계	31(100.0)	71(100.0)
학 생 수	국립	8,012( 38.6)	28,910( 36.9)
	공립	742( 3.6)	3,760( 4.8)
	사립	11,980( 57.8)	45,660( 58.3)
	서울	18,639( 89.9)	44,030( 56.2)
	지방	2,095( 10.1)	34,300( 43.8)
	계	20,734(100.0)	78,330(100.0)

자료: 문교부, 중등·고등교육기관 예북, 서울: 문교부, 1947

문교부, 교육기관통계, 서울: 문교부, 1955, pp 353-385.

이상과 같은 제도적 형태이외에 별과생과 청강생 제도 및 야간대학 제도는 제1, 2팽창기에 걸쳐 고등교육기회의 평등과 양적 확대에 기여하고 있었다.

첫째, 별과생 제도는 해방 직후 서울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자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였던 제도

이다. 1947년 5월 서울대학교의 별과생 규정(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51)에 의하면, 별과생은 갑, 을의 이종으로 나뉘는데, 갑종 별과생은 정식으로 대학학부에 입학할 수 없는 자, 본교 교수 자녀 및 가입학으로도 본교에 입학할 수 없는 자로서, 직업관계로 인하여 경력과 실력이 전문계통에 속한 과목을 수학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한편, 을종 별과생은 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직업 이외의 기타 관계로 인하여 대학 소정의 수업시간마다 등교수학이 불가능한 자로 되어 있었다. 갑종 별과생의 신분만으로는 대학입학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재학 중 적당한 시기에 정규 학생과 동등한 정도의 학점을 취득하고 또 정규 수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학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정규 학년에 편입할 수도 있었다. 당시 별과생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울대학교의 경우 1948년도에 의과대학에만 70명의 별과생이 있었다(참조: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51). 이로 미루어, 당시 별과생 제도는 주로 국·공립 대학에서 학교사정에 따라 채택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참조: 충남대학교30년사 편찬위원회, 1982:63).

둘째, 청강생 제도는 별과생과 함께 대학인구 확대의 주요한 기제였다. 청강생 제도는 교육법 제114조에 “대학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됨으로써 정부수립 후 법적 뒷받침을 받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청강생은 교육법에 명시되기 이전인 1946년부터 몇몇 대학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었다(참조: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51-52;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1985:367). 대개 청강생은 수강할 실력

을 가진 자로서 빈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력고사를 거쳐 입학을 허용하였고 또한, 청강생으로서 소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후 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청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량한 자는 정규 학생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강생 제도는 어떻게 보면 정원의 입학을 허용하는 공식 통로로서, 일부대학 운영자들에게는 정원확보의 한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참조: 한준상, 1983:311-312). 셋째, 당시 야간대학제도는 두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야간교수에 주력하여 생활상 사정의 소치로 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허다구학(許多求學)의 청년에게 최고 학술을 연구하는 기회를 주어 최고 교육의 보편화를 목적(국민대학30년사 편찬위원회, 1976:71)’으로 한 4년제 야간대학의 형태이다. 대표적인 정규 야간대학으로는 1946년 설립된 국민대학과 1950년 4월 대구에서 설립된 청구대학 및 1949년 10월에 설립된 한국대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청주상과대학(청주대학 전신)의 경우는 주간대학 운영과 함께, 1949년 11월 ‘연속강좌제’의 이름으로 야간대학의 실시 인가를 받아 주·야간을 동시에 개설한 대학이었다(대성60년사 편찬위원회, 1984:313). 둘째로, 한국전쟁기간의 피해복구를 비롯한 국가재건에 필요한 인재의 단기양성을 목적으로 당시 초급대학과 유사하게 창설된 야간대학의 형태가 있었다(문교부, 1958:95). 1957년 7월 서울고등 가정학교에서 승격한 근화여자 초급대학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야간대학들은 몇 가지 특성을 지녔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야간대학들은 사립에 집중되어 있고 국·공립대학에서는 대부분 개설되지 않았다. 또한, 설치 과정상에서 야간대학으로

출발하였다가 정규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주간대학으로 전환하기도 하고(국민대학의 경우), 주·야간 강좌를 동시 개설할 경우, 인가서에 대학정원의 대폭 증원이 수반되기도 했다. 특히, 4년제 정규대학이 야간대학 개설과 초급대학의 부설중 택일하는 사례(청주대학), 즉 야간대학 개설의 인가와 동시에 부설 초급대학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당시 대학운영의 실정에서는 야간대학 개설 운영이, 어려웠던 대학운영의 경비를 조달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었다. 예를들면, 해방 직후 부산에서 국립대학으로 발족한 부산대학교는 문교부의 정식 허가없이 교수후생비 조달의 한 방책으로서 국립대학의 관례에도 없는 야간학부를 개설하여 1947년 6월에 신규로 학생 150명을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부산대학교40년사 편찬위원회, 1986: 40-41). 해방 직후에는 이처럼 문교부의 인가없이 야간대학을 개설한 대학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에서만 하더라도 부산대학교에 야간부가 무허가로 개설되기 이전에 남조선대학(혹은 남선대학: 동아대학 전신)내에 이미 야간학부가 운영되고 있었다(부산대학교40년사 편찬위원회, 1986: 41). 이렇게 볼 때, 야간대학제도는 직업 생활자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대학운영자의 경영적 의지, 즉 정원확보를 위한 방도이기도 했다. 당시 대학의 이중신분 재적자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문교당국은 직장을 가진 학생, 즉 주간근무 직업을 가진 학생의 제적을 각 학교에 지시(동아일보, 1952.7.16)등으로 미루어 주간 대학생 중에 직업을 가진 이중신분자가 많았다는 사실은 일부 대학 설립운영자들의 야간대학 설립 운영의 목적이나 명분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훼손시키

는 것이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각종 자원의 편중배분

앞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의 재편과정에서 국립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지방 국공립 종합대학은 고도의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의 교수 연구를 통해 국가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고급 행정관료는 물론 우수한 최고의 지도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동시에 서구와 일본의 일류대학과 견줄 수 있는 국가의 위신을 상징하는 대학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한편 국공립의 각종대학과 사립 고등교육기관들은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각방면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적하에 급속히 확대되었다.

특히 사립대학을 중심으로한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사회 지도적 인재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교육민주화의 대전제하에서 정당화되고 조장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당시 문교당국은 '너도나도 대학설립(동아일보, 1946.12.3)이라는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정도의 대학팽창에 대해 대학설립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각출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려는데 국가가 못할 바에야 어떻게 억제하느냐는 식의 자유방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참조: 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 94; 김종철, 1979; 이형행, 1979).

그런데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급팽창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각종 자원의 배분 형태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질적 수준과 역할을 결정해주는 관전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대학을 둘러싼 각종 자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재원의 배분과 고등교육의 수익자 부담원칙 하에서 재원확보의 주요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대학진학 희망자의 할당 형태, 즉 학생정원을 중심으로 한정된 자원의 배분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재원의 배분형태

해방직후 고등교육기관의 재원은 국립대학의 경우 순수한 국고부담과 내부부에서 지방재정부족금내지는 지방분여세 등의 보조에 의해 충당되고 있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는 순수한 설립재단의 부담이었고 교육법상 가능한 국고 보조는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126). 이러한 고등교육의 재정제도는 일제하에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즉, 일제하에서 전문학교 이상의 관립학교의 고등교육비에 대한 재원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가 위주였으며, 이는 국고세입에 전입되었고 그 외에 상당한 국고 부담으로 충당하였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가 부담하였으므로 해방후의 재정형태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문교부, 1958:311).

이러한 기본적인 재정형태 이외에 해방직후 고등교육의 재정적 궁핍을 보완하기 위해 각대학은 후원회라는 조직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해방직후 후원회 제도는 비합법적으로 운영되어 오다 1953년 6월 문교부 장관 훈령 제16호로 합법적 인정을 받아 주로 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원의 사생활 보장을 위한 후생비에 충당되었다(문교부, 1958:313-314). 그런데 후원회의 회원은 주로 대학 재학생들의 학부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후원회비는 학생의 납입금과 같은 수익자 부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고지원의 한정된 재원은 전적으로 국립대학에 한정되어 배분되고 있었으며, 사립대학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재단 전입금과 학생의 부담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당시 사립대학의 유지재단은 극히 적은 토지수입에 의존하는 영세성을 지닌 명목상의 재단이 대부분이었던 관계로 학교운영은 거의 학생 수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재정적 열악성은 대학의 물적시설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즉, 당시 사립대학은 일제하에서 설립된 10여개교를 제외하고는 그 위치나 교지(校地)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방살이 아니면 아파트, 창고, 기숙사 등을 전용하여 설립되고 있었다(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128).

당시 고등교육기관의 총 소요예산 중에서 설립별 설립자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재정운영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설립별 설립자 부담금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대학의 국고부담은 7-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사립재단의 부담율은 2-30%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1955년 현재 국립의 5개 종합대를 포함한 총 8개교에 15억 정도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진 반면, 사립대학은 7개교의 종합대학을 포함하여 총 58개교의 재단 부담금이 11억에 지나지 않는다. 국·공·사립 고등 교육기관의 후원회 예산을 제외한 설립자 부담과 학생수입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1955년 현재 국립이 63,231원, 공립 43,927원, 사립 57,000원으로 나타나 국립과 공·사립 대학간에 다소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립과 사립대학 간의 자원배분 격차는 교육환

<표 3>

고등교육기관 설립별 설립자의 부담금

연도	국립(순 국고부담금)		공립(공공기관부담금)		사립(재단부담금)	
	학교수	금 액	학교수	금 액	학교수	금 액
1951		10,168,738 (68 6)				
1952		57,177,243 (85 9)				
1953		138,754,774 (67 5)		5,788,983 (60.8)		60,532,685 (28.1)
1954		565,653,427 (69 3)		23,682,264 (52 1)		329,187,654 (20 5)
1955	8	1,516,342,753 (83 1)	5	90,977,030 (67 8)	58	1,112,739,493 (23.7)

비고. ( )안은 설립별 기관의 총예산에서 해당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문교부, 문교개관, 서울. 문교부, 1958, pp 315-316

경과 대학의 사회적 지위를 포함한 대학 간의 교육 격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사립대학에 대한 편중된 재원의 배분은 해방이후 1950년대의 외국의 대한 교육원조의 배분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 4> 초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원조의 비교  
(단위 백만달러, %)

	원조불화(%)	대층자금(%)	합계(%)
초등교육 <sup>1</sup>	4.6 ( 15)	3 4 ( 15)	8 ( 15)
고등교육 <sup>2</sup>	13.5 ( 43)	8 0 ( 35)	21 5( 40)
(서울대)	( 9 5)( 30)	( 7 4)( 32)	16 9( 31)
총교육원조	31 2(100)	22 9(100)	54 1(100)

자료 : 한준상, 김성학, 현대한국교육의 인식, 서울: 청아출판사, 1990, p 199.

그밖의 고등교육의 원조는 한국해양대학의 설립과 경북대학교 대구의과대학의 시설 복구 및 기구도입비, 지방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서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서적과 실험용 기구도입비 등으로 지원되었다. 한국전쟁후 교육원조의 서울대학교를 중점으론 지방국립대학과 특정 사립대학에 대한 편중배분은 고등교육의 지위격차를 초래하는 또하나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특히 서울대학으로의 집중적인 편중배분 형태는 이 대학을 국내의 중심대학으로서 뿐 아니라 세계의 일류대학에 비견할 수 있는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설립 당초 목적의 반영이었다.

## 2. 학생정원의 할당경쟁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각 대학의 학생정원은 학교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의 주요 원천인 동시에 교육자원일 수 있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당시 학생수입금에 대한 의존율이 7-8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정원 확보여부는 대

<표 5>

고등교육기관의 설립별, 학교별 학생정원 현황

(1955년 3월 현재, 단위·명)

	국 립		공 립		사 립	
총 합 대 학	서울대	11,120	충남대	1,960	연희대	2,500
	전북대	3,280			이화여대	3,360
	전남대	3,580			고려대	2,560
	경북대	3,580			동국대	2,060
	부산대	4,670			성균관대	1,920
					중앙대	1,920
	계	26,230(5,246)	계	1,960(1,960)	계	16,680(2,383)
단과	3개교	2,680( 893)	2개교	1,120( 560)	26개교	22,020( 846)
대학	최소정원	880	최소정원	560	최소정원	280
	최대정원	920	최대정원	560	최대정원	1,480
초급	0		2개교	680( 340)	5개교	1,780( 356)
대학			최소정원	320	최소정원	80
			최대정원	360	최대정원	600

비고1 \* 사립기관의 각종학교는 제외하였음.

2 \* ( )은 1개교당 평균한 학생정원임.

3 최소정원은 해당 대학중 가장 정원이 적은 대학의 학생수이며, 최대정원은 가장 정원이 많은 대학의 정원수치임.

자료 \* 문교부, 교육기관통계, 서울 문교부, 1955, pp 357-385.

학의 존립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고등 교육기관의 재정적, 교육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각 대학들은 치열한 자원 확보, 즉 제한된 대학진학 희망자를 둘러싸고 보다 많은 학생정원의 할당경쟁을 벌여야만 했다.

그런데 당시 문교당국은 학생정원 인가를 통해 국립종합대학에 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편중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 교육원조는 시설과 기술원조로 대별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원조액의 국내 배분형태상의 특징은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참조: 이진이, 1989: 186-201; 한준상, 김성학, 1990: 132-218). 다음

<표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원조는 초등교육 원조의 약 2.6배에 달하는 규모였으며, 그중에서도 서울대학교에 전체 고등교육 원조의 약 79%인 169백만달러가 집중 투입된 것이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종합대학의 총 학생정원은 5개교에 26,230명인데 비해 사립종합대학은 7개교에 16,680명에 불과해, 국립의 모든 대학이 사립대학의 정원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학생정원은 사립종합대학의 평균정원 2,383명의 약 5배에 달하고 있다. 단과대학의 경우에도 국립단과대학은 평균정원 893명이며 사립단과대학은 846명으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사립단과대학과 초

급대학은 최소정원과 최고정원 사이의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은 종합대학과 소수의 단과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초급대학과 각종학교 등과 같은 하위학교와 단기 전문교육기관은 거의 사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립과 사립의 학생정원의 분포 현황은 앞에서 살펴본 재원의 편중배분과 일치하는 학생자원의 편중배분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립 서울대학교의 학생정원은 설립초인 1948년에는 7,098명, 1950년에는 9,440명, 한국전쟁 초기인 1951년에는 10,300명이었으며, 1953년에는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란중 인재양성의 긴요성'을 표방하여 700명을 증원하는 등으로 거의 매년 급격한 양적 확대를 꾀하고 있었다(서울대학교30년사 편찬위원회, 1976, :87, 98).

서울대학교의 이러한 양적 확대형태는 학교 운영의 재원을 학생의 수업료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례였을 것이다. 즉, 서울대학교의 학생증원 형태는 사립대학의 중요한 학생정원 확대노력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당시 사립대학들은 일제하에서부터 존재하였던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단의 궁핍한 재정여건으로 대학으로서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소수의 정원밖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대학관이나 각종학교 등으로 출발한 실정이었으므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정원을 인가받을 수 있는 종합대학을 향하여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학생증원을 시도하고 있었다(참조: 이광호, 1990 : 88-109).

한편 사립대학들은 문교부의 인가를 받는 합법적인 학생정원의 확대 노력이외에 실제로 제한된 대학진학 희망자를 놓고 치열한 할당경쟁을 해야만 했다. 즉, 제1, 2평창기를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급격한 양적 확대로 1953년 경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17,388명인데 비해 대학입학자 수는 18,041명(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 : 125,517)으로 대학입학정원이 당해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더 많은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과 보증을 받음으로써 학생의 재정적, 사회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일제하에서부터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고 있었던 국립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학생정원 조차 채우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서울대학교와 일부 사립대학의 입학경쟁과 학생모집 상황을 보면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해방직후인 1946년과 48년에는 입학경쟁율이 각각 2.8 : 1, 2.5 : 1이었으며, 1953년경부터는 매년 평균 4 : 1내지 5.5 : 1의 경쟁율(서울대학교30년사 편찬위원회, 1976 : 92,119)을 기록함으로써 치열한 입학경쟁을 보이고 있었으며, 연희대학의 경우도 해방직후 입학시험이나 편입의 기회가 있을 때 다수의 지원자가 쇄도하여 안정적으로 정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참조: 연세대학교 창립 백주년 기념사업회, 1985 : 348-350). 그런데 반해 해방이후 신설된 사립대학은 학생모집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부 대학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대학은 학생모집에 관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으나 예상외로 지원자가 적어 정원이 미달되어 수시로 입학할 허가하는 실정(명지대학교, 1979 : 19)이었으며,

1950년에 초급대학으로 개교한 한 대학은 개교 당시 120명 정원에 겨우 47명이 등록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덕성 60년사 편찬위원회, 1985: 270-271). 이와 같이 당시의 대학, 특히 사학에서는 정원을 지키지 않고 무자격 학생조차 포함하여 지원하는 학생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상례(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 덕성 60년사 편찬위원회, 1985: 271)가 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결국 당시 고등교육의 현실은 ‘교육을 위한 학교설립, 유지 보다는 학교 자체의 설립 유지를 위한 다수 학생 확보(동아일보, 1950.1.15)’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의 학생정원 배분 형태 및 대학진학 희망자를 둘러싼 학생모집 현상은 대학간의 질적 수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한국고등교육의 특징적 성격 형성

해방직후 한국고등교육체제는 교육민주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우수와 평등이라는 이중적인 교육신념을 바탕으로 재편되었으며, 이에 따른 고등교육의 재원과 학생정원과 같은 각종 자원의 편중배분 형태는 한국고등교육의 발전구조를 방향지워 주는 특성을 형성해주었다.

해방직후 고등교육기관은 대학으로 단일화되면서, 새로운 국가의 위신을 상징하는 ‘민족여망의 최고학부(서울대학교30년사 편찬위원회, 1976: 7)’로서 국립 서울종합대학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 국립종합대학이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사립대학은 인재양성의 필요성과 교육기회의

개방과 평등화를 기초로 하여 일제하에서의 각종 전문학교들이 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거의 자유방임적 상태에서 급속한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과정에서 국립대학은 국고지원과 우선적으로 대량의 학생정원과 교수요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사립대학은 빈곤한 재단의 재정적 여건은 물론 학생정원의 배분이나, 제한된 대학진학 희망자들을 모집하는 과정 등 각종 자원의 할당 과정에서 제약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별 역할면에서 국립대학은 우수한 학술인과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전문학교나 초급대학을 통합하여 종합대학이나 일부 단과대학의 형태에 집중되어 있고, 단기간의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초급대학등과 같은 전문기능의 학교는 거의 사립에 의존하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월성을 지향한 국립 종합대학의 양적 규모의 확대과정을 비롯한 성장형태는 사립대학 발전의 좋은 모델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사립대학들의 대부분은 설립 당시부터 정식대학으로 출범하기 보다는 열악한 인적, 물적 여건으로 대학관과 같은 대학설립 준비기관으로 발족하였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획득 경쟁에 유리한 상급학교로의 승격은 최대의 당면과제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립대학 설립운영자들은 설립초부터 종합대학으로의 승격을 약속하고, 이를 대학의 건립취지문에 반영시켜 대학운영의 최대목표로 부각시켜 왔다(참조: 국민대학30년사 편찬위원회, 1976: 72).

한편 해방직후 다양한 고등교육의 기회부여

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제안된 청강생제도와 야간대학과 같은 제도적 형태들은 사립대학 운영자들의 자원획득 경쟁에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사립대학의 집요한 생존노력은 국립종합대학의 선도적 역할과 어우러져, 고등교육의 제1팽창기에는 일부 사립전문학교의 종합대학화와 각 신설학교의 대학으로의 승격을, 제2팽창기에는 기존 사립대학의 종합대학 승격과 초급대학과 각종학교의 신설과 대학 승격이라는 특징적인 성장유형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해방후 최초로 단기간의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의해 특성화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한 형태인 초급대학도 4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독자적으로 각종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질적인 차이를 갖지 못한 채,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만이 안정적으로 학생을 확보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다(참조: 경희20년 편찬위원회, 1969: 22). 더욱이 초급대학이 4년제 정규대학을 위한 준비기관내지 열등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받는 데에는 당시의 문교당국이 중요한 일조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문교당국이 초급대학의 신설을 계획하고 이를 4년제 정규대학과 구분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동아일보, 1950.2.22). 첫째, 초급대학은 정규대학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현존 대학 중에서 선정하며, 앞으로 신설되는 대학은 되도록 초급대학으로 한다. 둘째, 2년제 초급대학은 대학에 부설하며, 특히 앞으로 제정될 대학기준에 합격한 대학 외는 모두 초급대학으로 한다. 셋째, 초급대학일지라도 설비가 대학기준에 맞게 되면 대학으로 승격시킬 것이다. 결국, 문교당국은 초급대학제도의 창

설을 계획하면서부터 이미 초급대학이 4년제 정규대학에 비해 각종 자원의 획득면에서 열등한 기관이거나 대학으로 승격하는 대기기관임을 공인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이렇게 볼 때 고등교육의 재편과정에서부터 고등교육기관들은 기능적으로 특성있게 분화되지 못하고 종합대학을 향해 일종의 획일화된 발전을 거듭하는 특징적인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고등교육의 이러한 획일적 발전경향은 대학의 사회적, 교육적 지위를 위계적으로 서열화하는 구조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국립과 사립대학은 우수와 평등의 교육적 신념과 각종 자원의 편중배분에 의해 양적, 질적 격차를 구조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또한 국립대학에 우선적으로 분배되고난 나머지의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동일차원에서 제약된 생존경쟁을 해야만 하는 사립대학간의 사회적 지위격차는 누가 먼저 각종 자원의 획득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느냐는 순서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즉,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내적 지위구조는 당시에 보다는 자원획득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설립순이나 종합대학으로의 승격순서에 따라 계층적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이 설립된 사립대학은 획기적인 자원획득의 수단을 보유하지 않는 한, 대학의 계층구조에서 최하위로 편입되어 제한된 경쟁을 치르는 비교적 안정된 위계적 서열구조가 고등교육의 재편과정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국립과 사립의 일원적 교육격차와 사립대학의 안정적 위계구조화의 특징적 성격이 고등교육체제에 온존하는 한, 대학이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인력의 양성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원복지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건국대학교 교지편찬위원회(1971), 건국대학교  
 교지(제1집),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경북대학교 30년사편찬위원회(1977) 경북대학교  
 30년사, 경북: 경북대학교출판부.  
 경희20년 편찬위원회(1969), 경희20년,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부.  
 공주사범대학 35년사편찬위원회(1983), 공주사  
 범대학 35년사, 충남: 공주사범대학출판  
 부.  
 국민대학 30년사편찬위원회(1977), 국민대학 30  
 년사, 서울: 국민대학출판부.  
 김기석(1989), “유상중등교육의 팽창”, 김신일  
 외, 한국교육의 현단계, 서울: 교육과학  
 사.  
 김영봉, N. F. 백진외(1980), 한국의 교육과 경  
 제발전,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김종철(1977), 한국고등교육연구, 서울: 배영  
 사.  
 대구대학교개교 20주년 기념간행(1966), 20년 약  
 사, 대구: 대구대학.  
 대성육십년사 편찬위원회(1984), 대성60년사,  
 청주: 청주대학교출판부.  
 대한민국문교부, 주한미군 경제협조처(1960),  
 한국국립 고등교육기관 실태조사보고서,  
 서울: 주한미군 경제협조처.  
 덕성 60년사편찬위원회(1985), 덕성60년사, 서  
 울: 덕성여자대학교출판부.  
 돌베개 편(1988), 주한미군사 1, 2, 3, 4  
 (HUSAFIK), 서울: 돌베개.  
 명지대학교(1979), 명지학원30년사,  
 1948-1978, 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문교부(1947), 중등, 고등교육기관예록, 서울:  
 문교부.  
 문교부(1948), 문교행정개황, 서울: 문교부.  
 문교부(1958), 문교개관, 서울: 문교부.  
 박동서외(1991), 한국고등교육기관의 유형별 역  
 할정립과 그 지원체제의 활성화 방안 연  
 구, 서울: 한국고등교육연구회.  
 반영환(1966, 1967), 대학가 반세기, 1, 2, 3.  
 청맥, 32, 33, 34호, 1966년 8월-1967년 5  
 월호.  
 백낙준(1953), 한국교육과 민족정신, 서울: 문  
 교사.  
 부산대학교40년사 편찬위원회(1986), 부산대학  
 교 40년사,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서울대학교 20년사편찬위원회(1966), 서울대학  
 교 2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대학교30년사편찬위원회(1976), 서울대학교  
 3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성균관대학교사편찬위원회(1978), 성균관대학교  
 사 1398-1978,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연세대학교 창립 백주년 기념 사업회(1985), 연  
 세대학교 백년사 1-5,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오천석(1975), 한국신교육사(하), 서울: 광명출  
 판사.  
 유네스코, 운크라 교육계획사절단(1952), 한국의

- 교육상황 : 예비조사보고서.
- 이광호(1990), “한국 교육체제 재편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재외(1990), 한국고등교육체제의 기능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진이(1989),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교육원조에 관한 연구”, 교육출판 기획실 엮음,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서울 : 푸른나무.
- 이형행(1979), “고등교육정책의 변천사(1945-1978)”, 교육행정연구회(편),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 배영사.
- 이희수(1986), “미군정기의 국립서울대학교 설립과정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고찰”,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북대학교 25년사편찬위원회(1978), 전북대학교 25년사, 전북 : 전북대학교출판부.
- 중앙대학교사 편찬위원회(1970), 중앙대학교사 1918-1968, 서울 : 중앙대학교출판부.
- 최혜일(1986), “국대안 반대운동의 이념적 성격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충남대학교 30년사편찬위원회(1982), 충남대학교 30년사, 충남 : 충남대학교출판부.
- 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1960), 한국교육10년사, 서울 : 풍문사.
- 한준상, 김성학(1990), 현대 한국교육의 인식, 서울 : 청아출판사.
- 한준상(1983), 한국대학교육의 회생, 서울 : 문음사.
- 허진규(1991), “기업의 현실과 대학에 대한 기업의 요구”, 한국고등교육연구회 제3차세미나 발표논문.
- Ericson, D.P. “The possibility of a general theory of the educational system”. Archer, M.S.(ed)(1982), *The Sociology of Educational Expansion*, London : SAGE Publications Inc.
- 江原武一(1984), 現代高等教育の構造,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 天野有夫(1986), 高等教育の日本的構造. 玉川 : 玉川大學出版部.